

■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신설 2024. 7. 4.>

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[] 지정 [] 변경지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/ 변경신청 7일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기관	기관명(법인명)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법정동 코드
	병성감정책임자 성명	
	병성감정담당자 성명	

변경사항	변경하려는 사항[기관명(법인명), 대표자·병성감정책임자·병성감정담당자, 소재지]
	변경사유

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

신청인 생년월일

(서명 또는 인)

주소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: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. 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나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수산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
 -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.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-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검토 및 현장조사(필요 시)	→	결재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